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여섯 칸짜리 계단

How Is Inheritance Tax Calculated? A Six-Step Staircase

가상의 사례

- **가족** — 아버지 사망 ·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심 · 성년 자녀 둘
- **재산** — 시가 20억원 부동산 하나
- **그 밖에** — 장례비 영수증 없음 · 빚 없음 · 사전증여 없음

이 집의 상속세는 얼마일까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계단 여섯 칸

상증세법 §13·§14·§25~§28·§69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① 상속재산
- ② 과세가액 (§13·§14)
- ③ 과세표준 (§25)
- ④ 산출세액 (§26)
- ⑤ 할증·세액공제 (§27·§28·§69)
- ⑥ 납부세액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2-1

상증세법 §25①·§26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가장 중요한 칸은 세 번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을 정한다

빼는 것 — 제14조 제1항

상증세법 §14①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례비 금액은 시행령에

같은 법 시행령 §9②1호(개정연혁·2호 생략) · 대통령령 제36741호 · 시행 2026.10.1

>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더하는 것 — 제13조 제1항

상증세법 §13① 전단·1호·2호(후단 생략)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일괄공제

상증세법 §18·§20①1호·§21①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기초공제** — 2억원 (§18)
- **자녀 인적공제** — 자녀 1명에 5천만원 (§20①1호)
- **일괄공제** — 둘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21①)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7

상증세법 §21①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5억원

자녀가 셋이어도 2억 + 1억 5천만 = 3억 5천만원 < 5억원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입법되지 않음

상증세법 §20①1호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 자녀공제 5억원 (정부안 — 입법되지 않음)
- ✓ 현행: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조건 ① 신고가 없으면

상증세법 §21① 단서(본문 생략)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10

조심2025서0982

이 사건에서는 일괄공제만 적용됐다

조심2025서0982 (2025. 11. 18. 경정 — 일괄공제 적용 부분은 처분 정당)

조건 ② 배우자 단독 상속

상증세법 §21②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배우자상속공제 — 제19조

상증세법 §19①(개정연혁·계산식 생략)·④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2. 30억원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세 겹

상증세법 §19①④ · 같은 법 시행령 §17①

- **기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 **바닥** —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더 빠질 수 있는 것과 한도

상증세법 §22·§23의2·§24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2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요건 셋 (§23의2)
- **공제 적용의 한도** — 공제를 모두 합쳐도 넘을 수 없는 선 (§24)

세율 — 제26조

상증세법 §26 세율표(본문 생략, 행 | 칸 ;;)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과세표준>;;<세율> |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16

상증세법 §56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
제56조 —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

과세최저한

상증세법 §25②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례 계산의 가정

가상의 사례

- 장례비 법정 최소 500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없음
- 신고세액공제 3%
- 단위 만원

사례 ① 배우자 없음 (단위 만원)

가상 사례 · calc_ep02.py · 홈택스 원 단위 대조

단계	금액
과세가액 (20억 − 장례비 500)	199,500
과세표준 (− 일괄공제 50,000)	149,500
산출세액 (40% 구간)	43,800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42,486**

사례 ② 배우자 있음 (단위 만원, 만원 미만 반올림)

가상 사례 · calc_ep02.py · 홈택스 원 단위 대조

단계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1.5/3.5)	85,714
과세표준 (30% 구간)	63,786
산출세액	13,136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12,742**

아래 표의 가정

가상의 사례

- 자녀 2명
- 전부 부동산
- 사전증여·채무 없음
- 장례비 500만원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

신고 후 세액 (단위 만원)

가상 사례 · calc_ep02.py 재계산

상속재산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5억	0	0
10억	0	8,633
20억	12,742	42,486
30억	31,400	81,286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23

가상 사례 · 상증세법 §19④·§21①

10억원 / 5억원

상속세가 0이 되는 선 — 배우자 있음 / 없음

조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 · 사전증여 없음

30억원일 때 (단위 만원)

가상 사례 · calc_ep02.py 재계산

- **배우자 있음** — 31,400
- **배우자 없음** — 81,286

핵심 포인트 · 슬라이드 25

가상 사례 · 상증세법 §22

전부 부동산 가정 — 가장 높게 나온 쪽

금융재산이 섞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만큼 내려간다 ·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기준

신고와 납부

상증세법 §67①④·§71①·§72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1.2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67①)
- **외국 주소** — 9개월 (§67④)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71①)
- **가산금**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 (§72)

서류에 남는 것

- 장례비 공제가 신고서에 0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채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 배우자 몫: 분할협의서대로 실제 명의 이전
- 금융재산: 빠짐없이 신고

상속세는 여섯 칸을 내려가며 계산되고, 세율을 정하는 칸은 과세표준이다

다음: 재산을 얼마로 보나 — 평가

핵심 용어 영문 대응표 (Key Terms)

한국어 용어	English Term
상속세 및 증여세법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국세기본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상속재산	inherited property
상속세 과세가액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과세표준	tax base
산출세액	computed tax amount
납부세액	tax payable
공과금	public charges
장례비용	funeral expenses
채무	debts
증여채무	gift obligation
사전증여재산 가산	add-back of prior gifts
상속공제	inheritance deduction
기초공제	basic deduction
그 밖의 인적공제	other personal deductions
자녀공제	deduction for children
일괄공제	lump-sum deduction
배우자 상속공제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
법정상속분	statutory inheritance share
금융재산 상속공제	financial property inheritance deduction
동거주택 상속공제	cohabited house inheritance deduction
공제 적용의 한도	limit on deductions
과세최저한	minimum taxable threshold
세율	tax rate
할증과세	surcharge
증여세액 공제	credit for gift tax paid
신고세액공제	filing tax credit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inheritance tax return
연부연납	payment in installments
연부연납 가산금	installment interest charge
담보	security (collateral)
정부안	government bill (proposal)
조세심판원 결정	Tax Tribunal decision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Hometax inheritance tax simple calculator
분할협의서	agreement on division of estate

근거 법령 · 기준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① 전단·1호·2호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①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0①1호·§21①②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①④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23의2①·§24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①②·§26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28①·§56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69①·§71①·§72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②1호 (대통령령 제36741호, 시행 2026.1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① (대통령령 제36741호, 시행 2026.10.1)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0982 (2025.11.18. 경정(일괄공제 부분은 처분 정당))
- **계산 재현** calc_ep02.py ·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원 단위 대조(20억 2사례) (2026-09-02 대조 · 2026-11-18 재계산)
- **민법** §1009 (법정상속분) (현행)

공부하며 남기는 일반 학습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에는 반드시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 A brand of UIEL Co., Ltd. · AI-generated narration.